# 서남권돔구장관리규정 사전예고

## 1. 개정이유

「서남권돔구장관리규정」 제18조(위탁시설의 경비·청소) 내용 중 위탁시설의 사용인에게 사고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위탁시설의 사용인이 사고 발생 시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 책임의 범위를 지정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만을 부담코자 함(안 제18조제1항).

## 3. 의견제출 관련사항

○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신 후 담당자 앞으로 서면(문서, 팩스, 이메일 등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| | |
|---|---|
| 의견제출자 개인성명 또는 단체이름 | |
| 주 소 | |
| 연락처 | |
| 의견내용 | |
| 의견제출의 근거 | |

※ 의견제출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FAX로 의견 제출시, 담당자 연락처로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의견제출 시한 (도착기준) : 2020년 07월 31일(금) 15:00

## 4. 접수부서, 담당자, 연락처 등

○ 접수부서 : 서울시설공단 기획조정실

○ 담 당 자 : 차 경 희, 김 태 환

○ 연 락 처 : Tel : 02-2290-7135

Fax : 02-2290-6442

E-mail : chagh@sisul.or.kr, taehwan@sisul.or.kr

**붙임 서남권돔구장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. 끝.**

# 서남권돔구장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(제 안 요 지)

## 1. 개정이유

「서남권돔구장관리규정」 제18조(위탁시설의 경비·청소) 내용 중 위탁시설의 사용인에게 사고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위탁시설의 사용인이 사고 발생 시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 책임의 범위를 지정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만을 부담코자 함(안 제18조제1항).

## 3. 참고사항

가. 제안근거

- 공단 규정 등 규제 입증책임제 시행 계획 알림(기획조정실-4741, 2020.07.17.)
- 규정관리규정 제7조(입안) 및 제10조(절차) 등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다. 절　　차 : 이사장 방침 후 공포·시행

라. 기　　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, 별첨

서울시설공단 규정 제 호

# 서남권돔구장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**서남권돔구장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**

제18조제1항 중 **“각종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”**을 **“사용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”**으로 한다.

부 칙

**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**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18조(위탁시설의 경비·청소)<br>① 주무부서장은 사용인 등(수탁자를 포함한다. 이하 '사용인 등'이라 한다)이 각종 재해 및 제반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점포 내·외에 자체 경비 및 필요한 조치를 하고, 도난 사고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<br>②~③ (생 략) | 제18조(위탁시설의 경비·청소)<br>① 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 **사용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**----------.<br>②~③ (현행과 같음) |